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 | 제 호                | 의결사항 |
| 의결연월일 | 2021. . .<br>(제 회) |      |

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
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
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 출 자  | 국무위원 김현수<br>(농림축산식품부장관) |
| 제출 연월일 | 2021. . .               |

법제처 심사 전

### 1. 의결주문

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# 2. 제안이유

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개정(법률 제17723호, 2020. 12.22. 공포, 2021. 6.23 시행)(법률 제18025호, 2021. 4.13. 공포, 2021. 6.23 시행)으로 정원이 갖추어야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, 생활정원을 조성·운영하고 정원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, 수목원 수익사업의 범위 등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과 국가정원의 지정요건 보완 등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수목원의 수익사업 범위 (안 제1조의4 신설)
  - 수목원의 수익사업 범위를 전시품·기념품 제작·판매, 수목원 재배식물 판매, 이용자 대상 교육 및 연수시설 설치·운영 등으로 함
  - 나. 생활정원을 조성·운영하는 공공기관과 정원의 시설 기준 (안 제1조의5 신설)
  - 국가, 지방자치단체 외에 생활정원을 조성하는 공공기관을 법 제18조의18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함
  - 정원이 갖추어야하는 시설 기준 중 국가정원은 별표2의2에 따른

지정요건, 지방정원 및 민간정원은 별표2의3에 따른 등록요건을 준용하도록 함

- 공동체정원, 생활정원 및 주제정원(교육·치유·실습·모델정원 등)은 별표1의2 정원의 시설 기준으로 별도로 정함

다. 국가정원의 지정요건 보완 (안 제8조의3, 별표2의2)

- 지방정원의 변경등록 발생 시 정원면적이 확대될 경우 변경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의 운영실적을 갖추도록 명확히 규정함
- 국가정원 지정요건 중 관리실 및 안내실의 경우 간이시설은 제외토록 함

라. 정원진흥사업의 추진 (안 제8조의6)

- 법체계에 맞춰 ‘정원산업의 지원’ 조문을 삭제하고, ‘정원진흥사업의 추진’을 신설
- 정원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을 법 제18조의18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, 정원관련 비영리법인, 대학 등으로 함

마.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(안 제8조의8 신설)

- 산림청장은 정원분야 국제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자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,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법 제18조의18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전담기관으로 운영토록 함

바.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사업 추가 (안 제8조의10)

- 생활정원 등 정원사업의 실행을 위해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사업범위를 각 정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,

정원관광 육성 등을 위한 사업을 추가 함

사.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(안 제11조)

- 법 제23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 중 연구 및 기술개발 등 업무는 국립수목원에 위임하고, 정원진흥 정보망 구축·운영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위탁하도록 함

##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와 합의 전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4월 ~ 5월중)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중

## 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

### 일부개정령안

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4 및 제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4(수목원의 수익사업) 법 제3조제1항제9의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
1. 간행물의 제작·판매
2.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·판매
3. 수목원에서 재배한 식물의 판매
4.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연수시설의 설치·운영
5. 그 밖에 식음료 매장의 설치 등 수목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업

제1조의5(정원의 시설 기준 등) ①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”은 법 제18조의18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말한다.

②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.

제3조의3 중 “별표 1의2”를 “별표 1의3”으로 한다.

제8조의3제1항, 제2항, 제4항 및 제5항 중 “법 제18조의3제1항”을 각각 “법 제18조의3제2항”으로, 같은 항 중 “제4항”을 “제5항”으로 한다.

제8조의4제2항 중 “시설”을 “등록”으로 한다.

제8조의6의 제목 “(정원산업의 지원)”을 “(정원진흥사업의 추진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법 제18조의8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제8조의6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18조의9제2항”을 “법 제18조의8제3항”으로, “정원산업”을 “정원진흥사업”으로, “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”을 “산림청장”으로 한다.

1. 법 제18의18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
2. 정원을 주된 사업범위로 하여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
3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, 산업대학,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
4.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

제8조의7 중 “법 제18조의10제1항”을 “법 제18조의14제1항”으로, “법 제18조의3제1항”을 “법 제18조의3제2항”으로 한다.

제8조의8부터 제8조의14까지를 각각 제8조의9부터 제8조의15까지로

하고, 제8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8(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) ①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12에 따른 정원산업 진흥을 위한 국제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정원산업 진흥에 필요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·연구 사업
2. 정원산업 관련 정보·기술·인력의 국제교류 사업
3. 정원산업 관련 전시회·학술회의 개최
4. 정원산업 분야 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정보제공, 상담, 교육 및 홍보 등의 지원
5. 해외 국제정원박람회, 전시회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
6. 그 밖에 정원산업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18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전담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제8조의9(중전의 제8조의8)제1항 및 제2항 중 “법 제18조의11제2항”을 각각 “법 제18조의15제2항”으로 한다.

제8조의10(중전의 제8조의9)의 제목 “(한국수목원관리원의 사업)”을 “(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사업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

중 “법 제18조의14제1항제4호”를 “법 제18조의18제1항제4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“수목원”을 각각 “수목원·정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법 제18조의14제1항”을 “법 제18조의18제1항”으로, “한국수목원관리원”을 “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”으로 한다.

1.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- 5의2. 수목원·정원 진흥을 위하여 법 제3조제1항(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.)에 따른 수목원 및 법 제3조제2항의 정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
- 5의3. 정원관광 육성 및 그 지역 소득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

제8조의11(중전의 제8조의10)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8조의14제3항”을 “법 제18조의18제3항”으로 한다.

제8조의12(중전의 제8조의11)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8조의16제2항”을 “법 제18조의20제2항”으로 한다.

제8조의13(중전의 제8조의12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8조의17제1항제2호”를 “법 제18조의21제1항제2호”로 한다.

제8조의14(중전의 제8조의13)제1항 본문 중 “법 제18조의18제1항”을 “법 제18조의22제1항”으로 한다.

제8조의15(중전의 제8조의14)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법 제18

조의19제1항”을 “법 제18조의23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제8조의9제6호”를 “제8조의10제6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법 제18조의19제1항”을 “법 제18조의23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제8조의9제6호”를 “제8조의10제6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8조의19제2항”을 “법 제18조의23제2항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업무(수목원 분야에 한정한다)를”을 “다음 각 호의 권한을”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법 제18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
  - 5. 법 제18조의10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교류 및 기술의 협력
  - 6. 법 제18조의10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성과와 기술의 보급 촉진
- 1.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업무(수목원 분야에 한정한다)
  - 2. 법 제18조의9제3항에 따른 정보망 구축·운영

제11조의2제1호 중 “제8조의8제1항”을 “제8조의9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제8조의8제2항”을 “제8조의9제2항”으로 한다.

별표 1의2를 별표 1의3으로 하고,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  
별표 2의2 제3호다목 중 “안내실”을 “안내실(간이시설은 제외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표 제4호의 지정요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지방정원으로 등록한 후 3년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을 것

(다만,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정원 변경등록 시 확대된 면적에 대해서는 변경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한다)  
나. 최근 3년 내에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정원의 품질 및 운영·관리 평가결과가 70점 이상일 것

별표 2의3의 제목 중 “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및 시설 기준”을 “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및 등록 기준”으로 한다.

별표 2의3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, 같은 호 가목 표 외의 부분 및 나목 표 외의 부분 중 “시설”을 각각 “등록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정원의 시설 기준(제1조의5제2항 관련)

| 정원의 구분   | 시설 기준  |
|----------|--|
| 1. 국가정원  | 별표 2의2 국가정원 지정요건과 같음   |
| 2. 지방정원  | 별표 2의3 지방정원의 등록 기준과 같음   |
| 3. 민간정원  | 별표 2의3 민간정원의 등록 기준과 같음   |
| 4. 공동체정원 | 가. 면적 및 구성<br>1) 정원의 총면적이 1,000제곱미터 이상일 것(최소 1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분산하여 조성 가능)<br>2) 정원을 공동으로 조성하고 운영하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<br>나. 세부시설<br>1) 공동체정원 목적에 적합한 정원조성과 운영에 관련된 안전을 고려한 시설   |
| 5. 생활정원  | 가. 면적 및 구성<br>1) 정원의 총면적이 1,000제곱미터 이상일 것. 다만, 실내에 조성되는 정원일 경우에는 정원의 총면적이 1,0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도 가능<br>2)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한 생활권역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할 것<br>나. 세부시설<br>1) 생활정원 목적에 적합한 정원조성과 활동에 관련된 안전을 고려한 시설   |
| 6. 주제정원  | 가. 교육정원<br>1) 면적 및 구성<br>가) 정원의 총면적은 제한 없음<br>가) 교육 및 놀이 등을 할 수 있는 정원으로 교육공간과 프로그램이 있을 것<br>나) 식물 등의 교육을 위한 식물선정이 고려될 것<br>2) 세부시설<br>가) 교육 및 놀이 등의 체험활동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할 것<br>나)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해설판, 식물표찰 등의 안내시설이 있을 것<br>다) 정원을 통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안전을 고려한 시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나. 치유정원                    | 설 등을 갖출 것<br>1) 면적 및 구성<br>가) 정원의 총면적은 제한 없음<br>나) 신체적·정신적 건강을 증진·지원하기 위하여 정원치유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건강 개선 및 정원치유 프로그램이 있을 것<br>다) 장애인의 이용을 충분히 고려할 것<br>라) 정원치유 활동 및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식물 선정과 배치가 반영될 것<br>2) 세부시설<br>가) 정원에서의 치유 활동에 필요한 안전을 고려한 시설 등을 설치할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다. 실습정원                    | 1) 면적 및 구성<br>가) 정원의 실습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실습인원의 규모에 맞는 면적으로 설치할 것<br>나) 별표 2의3에 따른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이상의 지도하에 정원설계, 조성 및 정원관리 등의 실습과정으로 조성된 정원일 것<br>2) 세부시설<br>가) 정원조성 및 관리 등의 실습을 위한 도구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것(간이시설을 포함한다)<br>나) 정원조성 및 관리 등의 실습 시 실습교육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(가시시설을 포함한다) |
| 라. 모델정원                    | 1) 면적 및 구성<br>가) 정원의 총면적은 제한 없음<br>나) 정원관련 신기술, 신소재 및 자동화 기술 보급을 위해 조성되는 정원일 것<br>다) 정원 식물의 식재조합과 유지·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조성된 정원일 것<br>2) 세부시설<br>가) 모델정원의 식물, 기술 등 안내 및 홍보시설을 설치할 것  |
| 마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 |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 |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----|---|
| <신 설> | <p>제1조의4(수목원의 수익사업) 법 제3조제1항제9의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</p> <p>1. 간행물의 제작·판매</p> <p>2.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·판매</p> <p>3. 수목원에서 재배한 식물의 판매</p> <p>4.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연수시설의 설치·운영</p> <p>5. 그 밖에 식음료 매장의 설치 등 수목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업</p> |
| <신 설> | <p>제1조의5(정원의 시설 기준 등) ①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”은 법 제18조의18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말한다.</p> <p>②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정원이 갖추어야하는 시설 기준은</p>   |

제3조의3(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)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.

제8조의3(국가정원의 지정요건 등)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요건은 별표 2의2와 같다.

②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정원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③ (생략)

④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다.

⑤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조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정원을 조성·운영하는 지

별표 1의2와 같다.

제3조의3(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) -----  
-----  
----- 별표 1의3-----.

제8조의3(국가정원의 지정요건 등) ① 법 제18조의3제2항-----  
-----  
-----.

② 법 제18조의3제2항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법 제18조의3제2항-----  
-----  
-----.

⑤ ----- 법 제18조의3제2항-----  
----- 제5항-----  
-----  
-----

방자치단체에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8조의4(정원의 등록 등) ① (생략)

② 법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는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및 시설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.

③ (생략)

제8조의6(정원산업의 지원) ① 법 제18조의9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원산업 분야 창업자(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창업자를 말한다)

2. 정원과 관련하여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

<신 설>

-----  
-----.

제8조의4(정원의 등록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등록 -----  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8조의6(정원진흥사업의 추진)

① 법 제18조의8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18의18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

2. 정원을 주된 사업범위로 하여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

3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, 산업대학, 전문대학 및 기술대

<신 설>

② 법 제18조의9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정원산업 지원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제8조의7(정원지원센터 설치·운영)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른 정원지원센터는 국가정원(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을 포함한다)에 설치·운영한다.

<신 설>

학

4.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

② 법 제18조의8제3항-----  
----- 정원진흥사업 -----  
----- 산림청장-----  
-----.

제8조의7(정원지원센터 설치·운영) 법 제18조의14제1항-----  
----- 법 제18조의3제2항-----  
-----.

제8조의8(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) ①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12에 따른 정원산업 진흥을 위한 국제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정원산업 진흥에 필요한 국제

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

· 연구 사업

2. 정원산업 관련 정보·기술·

인력의 국제교류 사업

3. 정원산업 관련 전시회·학술

회의 개최

4. 정원산업 분야 사업자의 해외

진출에 대한 정보제공, 상담,

교육 및 홍보 등의 지원

5. 해외 국제정원박람회, 전시회

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

6. 그 밖에 정원산업과 관련된

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을

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

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

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

여 법 제18조의18에 따른 한국

수목원정원관리원을 전담기관으

로 운영할 수 있다.

제8조의8(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

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등) ① 법

제18조의11제2항에 따른 수목원

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은 별

표 3과 같다.

② 법 제18조의11제2항에 따른

제8조의9(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

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등) ① 법

제18조의15제2항-----

-----

-----

② 법 제18조의15제2항-----

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

은 별표 3의2와 같다.

제8조의9(한국수목원관리원의 사

업) 법 제18조의14제1항제4호에

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

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

다.

1.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

목원에서 수행하는 법 제3조제

1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

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

2. (생 략)

3. 수목원 진흥에 필요한 정보

및 정보시스템 등의 관리·제

공

4. 수목원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

개발·보급

5. 수목원 관련 전문인력 양성

<신 설>

<신 설>

-----

-----

제8조의10(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

의 사업) 법 제18조의18제1항제

4호-----

-----

·

1.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

목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
2. (현행과 같음)

3. 수목원·정원 -----

-----

-

4. 수목원·정원 -----

-----

5. 수목원·정원 -----

5의2. 수목원·정원 진흥을 위하

여 법 제3조제1항(제10호부터

제13호까지의 국립수목원에서

수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.)에

따른 수목원 및 법 제3조제2항

의 정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

한 보조 또는 지원

5의3. 정원관광 육성 및 그 지역

6. 법 제18조의14제1항에 따른 한국수목원관리원(이하 “관리원”이라 한다)의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 재원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

7. (생략)

제8조의10(관리원의 설립등기 및 정관) ① 법 제18조의14제3항에 따른 관리원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② (생략)

제8조의11(공무원의 파견요청 등) ① 관리원의 이사장(이하 “이사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18조의16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파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제8조의12(차입금의 승인 신청)

소득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

6. 법 제18조의18제1항-----  
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-----  
-----  
-----

7. (현행과 같음)

제8조의11(관리원의 설립등기 및 정관) ① 법 제18조의18제3항-----  
-----  
-----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의12(공무원의 파견요청 등) ① -----  
----- 법 제18조의20제2항-----  
-----  
-----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8조의13(차입금의 승인 신청) -

관리원은 법 제18조의17제1항제2호에 따라 차입금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차입금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제8조의13(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) ① 관리원은 법 제18조의18제1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(이하 “기부금품”이라 한다)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. 다만,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제8조의14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) ① 이사장은 법 제18조의19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제8조의

----- 법 제18조의21제1항제2호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8조의14(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) ① ----- 법 제18조의22제1항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8조의15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) ① ----- 법 제18조의23제1항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----- 제8조의10

9제6호에 따른 수익사업이 포함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.

1. 2. (생략)

② 이사장은 법 제18조의19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안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제8조의9제6호에 따른 수익사업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③ 법 제18조의19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2. (생략)

제11조(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)

①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한다.

1. ~ 3. (생략)

제6호-----  
-----  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법 제18조의23제1항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제8조의10제6호-----  
-----  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③ 법 제18조의23제2항-----  
-----  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)

① -----  
-----  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②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업무(수목원 분야에 한정한다)를 관리원에 위탁한다.

<신설>

<신설>

제11조의2(규제의 재검토)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제8조의8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수목원 전문가 교육기관

4. 법 제18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

5. 법 제18조의10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교류 및 기술의 협력

6. 법 제18조의10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성과와 기술의 보급 촉진

② -----  
----- 다음 각 호의 권한을 -----  
-----  
-----.

1.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업무(수목원 분야에 한정한다)

2. 법 제18조의9제3항에 따른 정보망 구축·운영

제11조의2(규제의 재검토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제8조의9제1항 -----  
-----
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지정기준   | ----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제8조의8제2항 및 별표 3의2<br>에 따른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<br>지정기준 | 2. 제8조의9제2항 -----<br>-----<br>----- |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|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산림청 정원팀 |                  |
| 연 락 처   | (042) 481 - 4248 |